하이퍼링크의 저작권법적 문제
-해외판결을 중심으로-
Legal Problems of Hyperlink under Copyright Act

김 인 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부교수

Inchul Kim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요약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이용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되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것의 없으며, SNS를 사용하면서 거의 매일 하이퍼링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퍼링크가 합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고, 이러한 링크를 관리하여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증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EU, 대한민국의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현재까지 판례를 비판하며, 입법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Ⅰ. 서론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필수품으로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 거래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World Wide Web인데 이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시·공간을 넘어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하이퍼링크로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합법·불법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Ⅱ. 해외의 논의

1. GS Media 사건 [1]

1.1 사실관계

네덜란드 앵커우먼의 누드 사진이 플레이보이誌에 게재되기 전에 유출되어 호주의 Filefactory.com에 업로드되었고, GS Media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제공하여 누구든지 쉽게 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플레이보이誌는 Filefactory.com와 GS Media에 삭제요청을 하여, Filefactory.com은 그 파일을 삭제하였지만, GS Media는 삭제요청을 거부하고, 누드 사진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다른 사이트를 링크하였다. 이에 네덜란드 플레이보이誌는 불법적인 저작물에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침해로 네덜란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2 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항소법원은 불법적으로 이미 업로드된 사진에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Svensson 사건에서 ECJ가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침해 요건 중의 하나인 new public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는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선결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위하여 ECJ에 요청하였다.

ECJ는 Svensson 사건을 인용하면서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에 해당하려면 송신여부와 공중에 대한 송신이라는 요건을 재확인하면서 링크설정행위는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works)에 포함되고, 저작권 정보화 지침의 목적이 이러한 링크도 포함하려고 하며, 저작권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상 정보화지침 제3조 제1항의 송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링크설정행위는 고의행위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노출시켰으며, 영리목적이므로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2. Perfect 10 v. Google [2]

2.1 사실관계

음란사진의 저작권자인 원고 Perfect 10은 유료회원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용허락없이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Google의 검색엔진이 자동적으로 원고들의 사진들을 수집한 후 thumbnail 사이즈로 축소시키고, 수집된 원본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thumbnail 이미지를 클릭하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불법저작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2.2 법원의 판단

유형물에 의한 전시권(public display right)만 인정하는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무형전시도 인정하는 미국 법원은 서버 테스트에 따라 직접 송신을 하는 자만이 전시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복제하여 인터넷에 올린 웹사이트 운영자만이 전시권 침해자라고 판단하였고, 유형물의 배포권(distribution right)만 인정하는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무형의 배포도 인정하지만 Google에서 원고의 저작물인 사진을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사진의 위치정보만을 송신하는 것이고, 저작물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포권 침해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4항소법원은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은 요건불비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지만, 기여책임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Google 시스템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으로 인지하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없이 기여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Perfect 10의 Google에 대한 삭제고지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없이 기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고, 지방법원은 Perfect 10의 고지가 불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여책임을 위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거절하였다.

3. Universal Music Australia v. Cooper[3]

3.1 사실관계

E-Talk과 ComCen이 공동으로 호스팅하는 mp3s4free.net라는 도메인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Stephen Cooper는 웹사이트에 무료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수 많은 음악저작물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러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반사들은 Cooper 웹사이트에 링크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기여책임을 주장하면서 Cooper, E-Talk, ComCen, E-Talk 이사인 Mr Bal, ComCen의 직원인 Mr Takoushis를 고소하였다.

3.2 법원의 판단

Federal Court는 피고들은 링크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호주 저작권법 제10조에 규정된 Communicate는 저작물을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에서 권한을 부여(authorize)하는 것의 정의는 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 Limited v Jain 사건에서 허가하는 것, 승인하는 것, 묵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행위가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특별히 연관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authorize)한 것이므로 피고들 전부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에서 Cooper는 저작권 침해행위 (불법복제, 불법저작물에 접속)를 금지할 수 있는 능력(power to prevent)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능력은 저작권 침해행위 방법이 되는 수단을 회피하는 권한도 포함한다라는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v Moorhouse 사건을 언급하면서 Cooper는 공중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음악저작물을 통제한 권능도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Cooper는 누구든지 하이퍼링크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의도적으로 구축하였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부가시킴으로써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통하여 재정상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그 웹사이트의 이용자들과 상업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며, disclaimers 문구를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막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침해를 하도록 지원하였으며 Cooper웹사이트의 이름인 “mp3s4free.net”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Ⅲ. 결론

해외 판결을 보면 미국 법원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권 직·간접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불법저작물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직접침해로 보았으며, 호주는 누구든지 불법저작물에 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방조책임과 유사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대법원[4]에서 불법저작물에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그 이후 불법저작물의 링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의 정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중송신권에 대한 방조 책임으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상고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Case C-160/15
[2] 508 F.3d 1146 (9th Cir. 2007).
[3] [2006] FCAFC 187
[4]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